계약대금 내용증명에 답할 때: 공제·부인·미확정 손해를 분리한 가상 회신 예시

먼저 이 예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가상 업체 해솔정밀은 설비 유지관리업체의 내용증명에서 기본 관리대금 12,000,000원과 긴급출장비 3,000,000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기본 관리대금 12,000,000원의 발생은 인정하지만, 같은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선금 2,000,000원이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솔정밀은 긴급출장을 발주한 사실을 다투며, 설비 중단으로 인한 손해 3,000,000원은 발생 원인·인과관계·금액 등을 확인 중입니다. 계약 내용, 선금의 지급 명목과 기본대금의 이행기가 확인된다는 가정입니다.

이 예시는 아직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회신입니다. 따라서 기본대금의 발생 인정액 12,000,000원, 기지급액 2,000,000원, 상계 전 미지급 기본대금 10,000,000원을 구별합니다. 손해 추산액 3,000,000원을 다시 빼서 지급액을 7,000,00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기한·지연손해금·계약 해석·상대방이 이미 한 정산은 이 문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항목	가상 금액	회신에서의 위치
기본 관리대금 발생액	12,000,000원	발생 자체를 인정하는 범위
같은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선금	2,000,000원	송금일·명목을 확인하여 청구 계산에서 반영
상계 전 미지급 기본대금	10,000,000원	위 두 금액의 차이. 지급 시기·방법은 별도 확인
긴급출장비 청구액	3,000,000원	발주 사실과 계약 근거를 다투는 별도 항목
설비 중단 손해 주장액	3,000,000원 추산	발생·인과관계·금액 확인 중. 이 회신에서 상계하지 않음

보내기 전 확인

1. 계약서·변경합의·선금 송금자료를 대조해 2,000,000원이 이 기본 관리대금의 선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 거래에 지급한 돈이면 위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청구한 긴급출장비의 계약 조항, 발주·승인 흔적, 작업일지, 계산서를 확보합니다. '발주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자료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손해 3,000,000원을 자동 공제하거나 '손해가 확인되면 상계한다'는 조건부 상계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실제 상계를 하려면 민법 제492조의 요건과 제493조의 의사표시 방식을 따로 검토합니다.
4. 법인 상호·대표자·주소, 받은 내용증명의 발송일·등기번호, 발송할 내용문서의 최종본을 확인합니다. 발송 최종본·접수증·등기번호를 보관하고, 도달 여부가 중요하면 배달증명이나 배송기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5. 지급명령이나 소장도 받았다면 이 회신으로 법원에 낼 이의신청서·답변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문서의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이 자료의 한계

민법 제492조 제1항·제493조 제1항: 상계 요건과 의사표시, 조건·기한 금지. 공식 조문 보기 (www.law.go.kr)

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함. 공식 조문 보기 (www.law.go.kr)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 배달증명은 배달 일자·수취인에 관한 별도 증명. 공식 조문 보기 (www.law.go.kr)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04. 이 자료는 가상 사례의 회신 구조이지 실제 사건의 완성 서류나 법원·우체국 공식 양식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회신의 법률적 타당성이나 상대방의 실제 수령, 미지급액의 확정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계약·지급 명목·이행기·손해 자료가 다르면 문구와 금액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계약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가상 회신 내용문서

제목: 설비 유지관리대금 청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발신인: 해솔정밀 주식회사 / 주소: [실제 법인 주소]

수신인: [유지관리업체의 정확한 상호] / 주소: [확인한 실제 주소]

관련 문서: 귀사가 20XX년 ○월 ○일 발송한 「관리대금 및 긴급출장비 지급 요청」 내용증명(등기번호 [확인 후 기재])

1. 당사는 [계약일] 체결한 설비 유지관리계약에 따른 기본 관리대금 12,000,000원의 발생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당사가 [송금일] 위 기본 관리대금의 선금으로 지급한 2,000,000원이 귀사의 청구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송금의 명목과 귀사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급을 반영하면 당사가 확인하는 상계 전 미지급 기본대금은 10,000,000원입니다.

2. 귀사가 별도로 청구한 긴급출장비 3,000,000원에 관하여, 당사는 현재 해당 긴급출장을 발주·승인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상 청구 근거, 발주·승인 자료, 출장일과 수행 내역, 금액 산정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설비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원인, 귀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금액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언급한 3,000,000원은 확인 전 추산액으로 확정된 채권액이 아닙니다. 이 회신은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성립·금액을 확정하거나 이를 기본대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자료 확인 후 별도 주장·청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 기본대금의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은 계약서·기지급 내역 및 귀사의 정산자료를 다시 대조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역시 확인된 미지급 기본대금의 지급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긴급출장비 및 손해 문제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면 그 범위와 조건을 별도 문서로 정하겠습니다. 이 회신만으로 전체 분쟁이 종결되거나 어느 일방이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XX년 ○월 ○일

발신인 해솔정밀 주식회사 / 대표자 [실제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